

물류설비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물류표준화 확산 제고



한상현
에너지물류표준화 사무관
02-509-7271

기술표준원은 물류설비 인증업무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및 내용 등을 개선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기업의 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하여 「물류설비인증요령」을 개정고시(’09. 5.27) 하였다.

그간 정부는 물류설비표준의 이행·확산과 표준설비 활용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류설비인증제도(LS)를 도입(’04. 7), 수송·배송 등 4개분야 34개 설비(품목)에 대한 인증을 실시해 왔으며,

물류설비인증 현황(’08.12말 현재)

’04년도	’05년도	’06년도	’07년도	’08년도	합 계
8 업체 (13 설비)	86 업체 (156 설비)	12 업체 (21 설비)	15 업체 (29 설비)	3업체 (8 설비)	124 업체 (227 설비)

물류설비 인증제도의 효율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9월 민간전문기관인 ‘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’을 ‘물류설비인증기관’으로 지정,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이관한 바 있다.

이번 인증요령 개정고시를 통하여 물류산업계에서 물류표준설비의 생산, 사용이 보다 더 활성화 되어, 포장·운송·하역·보관·정보 등 각 부문별 물류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물류표준화 이행·확산을 유도하고, 인증제도의 합리적 개선, 인증절차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 및 인증업체

의 사후관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등 산업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정부에서는 향후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대상 품목(설비)을 발굴하여 규격을 신규 제정하고, 기존 인증대상 품목(34개)중 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규격을 개정하는 등, 업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계속 수렴하여 동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물류설비인증요령 개정고시 주요내용

- 기표준술원 고시 제2009-0241(’09.5.27) -

- ① 인증기관의 행정보고 축소(제9조제7항, 제27조제2항 등)
 - 현행) ‘물류설비인증심의결과’, ‘인증심사결과 보고’ 등 8종
 - ⇒ 개정) ‘인증서발급결과’, ‘정기검사결과보고’ 2종으로 축소
 - ※ 개정사유: 보고 필요성이 적거나 유사한 보고 6종 폐지 (물류설비인증심의결과, 인증심사결과, 인증서재교부, 이의신청조사결과, 시정결과, 인증설비사용실적 보고)
- ② 물류설비성능검사 중복규정 정비(제22조)
 - 현행) ‘성능검사절차 및 방법’ 이 제22조와

제25조(별표4)에 중복규정
 ⇒ 개정) 성능검사는 '별표4'의 '성능검사절차 및 방법'을 적용하도록 중복내용은 삭제하고 조문정리
 ※ 개정사유 : 성능검사의 절차 등이 중복·상충 되어 있어, 신청업체 및 인증기관에서 업무처리에 불편 초래

㉓ 인증신청 구비서류 간소화(제23조)
 ○ 현행) 물류설비 인증신청시 구비서류 8종 (법인등기부 등)
 ⇒ 개정) '물류설비의 설명서' 등 3종으로 축소
 ※ 개정사유 :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장심사시 확인 가능한 서류(법인등기부 등 5종)는 제외하여 구비서류 최소화

㉔ 인증시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 면제 확대(제25조, 별표4)
 ○ 현행) KS인증 설비의 경우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 일부생략
 ⇒ 개정) 신청설비가 타법령 및 제도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설비인 경우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 면제
 ※ 개정사유 : 동일설비·품목에 대한 중복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방지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(예 : KS인증, 안전인증, 치량형식 승인 등)

㉕ 정기검사 완화 및 구비서류 간소화(제32조, 별지 제11호, 제11호의2)
 ○ 현행) 정기검사(현장심사 및 성능검사)는 연 1회 실시. 단, 2년마다 인증기준 충족 입증서류 제출할 경우 정기검사 감축
 ⇒ 개정) 설비인증은 성능검사성적서 확인만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현장심사 병행, 경영시스템인증의 정기검사는 3년 주기로 완화
 ※ 개정사유 : 물류설비인증은 일관수송체계상의 각 설비의 정합성이 핵심사항인바, 1년주기 정기검사는 과도한 규제로 정기검사방법 및 주기완화 필요(예 : KS인증 정기검사 주기 3년 등)
 ○ 현행) 정기검사 신청시 구비서류는 '설비인증'이 8종, '경영시스템 인증'이 9종(제3항, 별지

제11호, 제11호의2)
 ⇒ 개정) 설비성능검사 성적서(또는 인증서) 등 3종으로 축소
 ※ 개정사유 : 정기검사 구비서류는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토록 하고, 실적보고서 등 필요성이 적거나 현장심사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

㉖ 불합리한 처분규정 폐지(제35조)
 ○ 현행) 인증설비가 인증규격등에 맞지 아닌한 경우 표시제거 명령 등 처분 조치
 ⇒ 개정) 삭제
 ※ 개정사유 :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처분규정으로 행정규칙 정비과제

㉗ 과도한 인증취소 요건 완화(제36조)
 ○ 현행)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, 무단 및 소재 불능, 정기검사 미수검, 정기검사 미신청 2회 및 표시제거 명령 미이행등이 인증취소 사유
 ⇒ 개정) 취소요건을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와 인증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, 정기검사 미수검 등은 시정 명령 등 처분절차를 두어 완화
 - 정기검사 미수검 등 단계별 처분절차 등은 '별표 5' (위반사항 처분기준)에 명시하여 반영
 ※ 개정사유 : 취소사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한정, 정기검사 미신청시 취소사유는 상위법령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규정

㉘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신설(제38조제7항)
 ○ 현행) 물류설비인증서 재발급시 수수료 없음
 ⇒ 신설) 인증업체 과실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서 재발급 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(국문 인증서 2만원, 영문인증서 3만원)
 ※ 사유 :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설비 부과(예 : KS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3만원)

㉙ 인증업체 자료제출 의무 폐지(제41조제1항)
 ○ 현행) 인증업체는 매년 정기검사시 인증설비사용실적 등을 인증기관에 제출
 ⇒ 개정) 인증설비 공급·사용실적 등 자료는 사후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만 요구토록 제한

- ※ 개정사유 : 인증업체의 행정보고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필요성이 적은 보고의무 폐지

물류설비(LS) 인증제도 개요

ㄱ 법적 근거

-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(물류설비의 인증)
 - 같은법시행령 제18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
- 물류설비인증요령(기표원고시 제2009-0241호)

ㄴ 인증 대상

- 물류설비를 생산·수입·인대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자와 동 설비를 사용하는자 (물류기업 및 제3자 물류업자 포함)

ㄷ 인증 기준

- 파렛트, 지게차, 컨테이너등 물류설비의 단위 품목별로 표준파렛트(1,100mm×1,100mm)와의 정합성을 평가하여 인증

ㄹ 인증 설비

-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설비(31개 품목)
 - 수송·배송설비 분야 (파렛트, 지게차, 부인운반차 등)
 - 보관·하역설비 분야 (파렛타이저, 랙설비, 포장확소용기 등)
 - 분류·포장설비 분야 (자동분류기, 포장기, 바코드인식기 등)
 - 물류정보화설비 분야 (전자문서, 바코드, RFID 등)

□ 인증 절차

인증신청 → 성능검사 → 현장실사 → 인증심의회
(인증기관) (검사기관) (심사원) (인증기관)

→ 인증서 발급
(인증기관)

| 기술표준 2009. 7